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68
----------	-------

발의연월일 : 2023. 5. 19.

발의자 : 조오섭 · 윤영덕 · 최종윤

우원식 · 김승남 · 소병훈

김원이 · 한준호 · 어기구

송갑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하여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

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
출 감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31조, 제41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를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8호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u>에너지효율등급</u>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 <u>로에너지건축물</u>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색건축의 <u>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u> 인증 및 사후 관리	2. ----- <u>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u> ----- .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u> 를 시행한다.	① ----- ----- ----- ----- <u>제로에너지건축물</u>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u> 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u>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 ----- <u>제로에너지건축물</u> ----- ----- ----- <u>제로에너지건축물</u> -----.
③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u> 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u>제로에너지건축물</u> ----- ----- ----- ----- ----- ----- ----- -----.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삭 제>

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
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다.

1. ~ 8. (생 략)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
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
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
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
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
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⑤ ----- 제로에너지
건축물 -----

-----.

1. ~ 8. (현행과 같음)

⑥ -----

---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
상을 받아야 하며 -----

-----.

-----.

<p>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2. (생략)</p> <p>3. <u>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u></p> <p>4. ~ 6.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② (생략)</p> <p>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u>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p>	<p>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 ----- ----- --- <u>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u> ----- -----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로에너지건축물</u> ----- -----</p>
--	---

